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기관명 : 신한투자증권(주)
2. 제재조치일 : 2026. 5. 13.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경고
임 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적경고 상당)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의 5명*
직 원 등	정직 3월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3월 상당) 1명 견책 1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

* 미등기임원

4. 제재대상사실

가.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 의무 위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 또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상근 임원으로서 파생상품 업무를 총괄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 하여야 함에도,

신한투자증권(주)(이하 “회사”)는 2022.1.1. ~ 2024.11.28. 기간 중 파생상품업무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28조의2 제1항

나. 장외파생상품 매매승인절차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약으로서 거래당사자 간에 미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외에는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할 때마다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 기본계약서에 근거한 채권가격·금리·통화 선도·스왑 거래이거나, 내부기준에 따라 파생상품업무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승인한 후 사후보고하는 거래

회사 A부서 등은 2022.1.12. ~ 2025.5.21. 기간 중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승인 대상인 주식스왑 매매 총 36,190건을 파생상품업무책임자 승인을 받지 않고 부서장 승인 하에 거래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1항 제4호
2.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 제4항

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금융회사는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6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장외파생상품 매매승인 절차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 매매승인 관련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
2.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7호

라. 위험부담한도 관리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서별 위험부담한도를 적절히 설정·운영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A부서가 2023.11.23.~2024.8.2. 기간 중 Net포지션 한도를 총 16회에 걸쳐 최대 4배까지 초과하였음에도, 리스크관리부는 한도초과 시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위험부담한도를 적절히 운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31조 제1항 제4호
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3. 「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 제2항

마.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 대상기간 중 발생한 손익을 해당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함에도,

회사는 2024.1월 중 발생한 파생상품 매매손익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아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이익 계정을 43억원 과소계상하고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관련손실 계정을 751억원 과대 계상함으로써, 2024년 1분기 보고서 및 2024년 상반기 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영업이익을 실제 값보다 794억원 과소 기재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1.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제3호
2. 「외부감사법」 제5조 제1항 제1호
3.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